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6

발의연월일: 2020. 8. 18.

발 의 자:이원욱·전용기·윤미향

강훈식 · 김윤덕 · 이정문

김철민 · 최종윤 · 정춘숙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유엔(UN)은 고령화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14.4%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 면지역의 경우 2018년 기준 27. 9%로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임.

이렇듯 지방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나 그간 여러 이유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어 왔음.

고향사랑 기부금이 도입되면 도시민은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세제혜택과 함께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과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 · 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개인 및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안 제4조).
- 라.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 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8조).
- 마.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안 제9조).

-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 축·운영하여야 함(안 제10조).
- 사.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 아.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 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향사랑 기부금"(이하 "기부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지가 아닌 곳에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하 "모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에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기부금 모금 주체 및 대상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과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개인 및 법인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제5조(기부·모금 강요의 금지)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법인에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제6조(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매체, 정보통신망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안내책자·인쇄물의 배부, 그 밖의 적합한 방법으로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 1.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 2. 호별 방문
 -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 권유·독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의 모금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부금의 접수) ①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 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
 -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한 개인 및 법인(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접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 된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될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혀금
-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기부 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 2.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 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 야 한다.
- 제12조(불법기부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1. 제4조를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
 - 2. 제5조를 위반하여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 3. 제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 금한 경우
 - 4. 제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 금을 접수한 경우

- 5. 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제13조(벌칙) ① 제5조를 위반하여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